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직 기간 확대〉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1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5.
3. 회부연월일 : 2026.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성희롱·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0조(징계의 효력) ①·② (생략)	제80조(징계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3개월-----1년 이하의----- -----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징계(懲戒)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범이나 의무를 위반한 구성원에게 가하는 제재를 의미하며,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함.

공무원 징계 제도를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이상 중징계), 감봉·견책(이상 경징계)의 6가지로 구분하고 징계의 종류별로 공직 배제 또는 신분상·보수상 불이익 등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¹⁾

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등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구분		신분 관련 효력	보수 관련 효력	비고
중징계	파면	· 공직 배제 /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 1/2 및 수당 1/2 감액	배제징계
	해임	· 공직 배제 /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 (금품비위) 퇴직급여 1/4 및 수당 1/4 감액	
	강등	· 1계급 내림 + 정직 3월 · 승진제한(3월+18월)	· 3월간 보수전액 감액 · 승급제한	교정징계
	정직	· 정직 1~3월(처분기간 중 직무종사못함) · 승진제한(정직기간+18월)	· 처분기간 중 보수전액 감액 · 승급제한	
경징계	감봉	· 승진제한(감봉기간+12월)	· 1~3개월 간 보수1/3(연봉자 4할) 감액 · 승급제한	
	견책	· 승진제한(6월)	· 승급제한	

자료: 인사혁신처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동법 제 79조의 징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²⁾

하위 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이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공무원 복무 관련 의무위반 행위를 비위유형별로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성 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비위행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성 관련 비위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때,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 중징계로서 정직부터 파면 처분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감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견책
4. 음란물 유포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다.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6.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8.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9.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가.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한다)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	강등 - 감봉
나.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정직 - 감봉

다만,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직처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2024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중 중징계 비율은 각각 74.7%, 78.2%로 높은 수준이나, 이 가운데 정직처분이 각각 48.6%(106명/218명), 71.6%(257명/359명)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 현황(2024년도 기준)]

(단위: 명)

구분	중징계					경징계			합 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소계	감봉	견책	소계	
전체	100 (4.5%)	214 (9.6%)	135 (6.0%)	599 (26.8%)	1,048 (46.9%)	555 (24.8%)	633 (28.3%)	1,188 (53.1%)	2,236 (100.0%)
품위유지의무 위반	54 (3.8%)	140 (9.8%)	98 (6.9%)	449 (31.6%)	741 (52.1%)	339 (23.8%)	342 (24.1%)	681 (47.9%)	1,422 (100.0%)
- 성 관련 비위	34 (11.6%)	58 (19.9%)	20 (6.8%)	106 (36.3%)	218 (74.7%)	50 (17.1%)	24 (8.2%)	74 (25.3%)	292 (100.0%)
- 음주운전	6 (1.3%)	44 (9.6%)	52 (11.3%)	257 (56.0%)	359 (78.2%)	96 (20.9%)	4 (0.9%)	100 (21.8%)	459 (100.0%)

자료: 인사혁신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비위의 중대성과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직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에서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확대하여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정직기간의 하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경한 단계로서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는 경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직의 하한을 3개월로 상향할 경우 종전에는 정직 1개월 또는 2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수 있었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최소 3개월의 정직처분이 이루어져 비위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중해질 수 있고, 반대로 징계권자가 이러한 과중성을 고려하여 정직 대신 감봉 등 경징계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제재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또한,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등에 따른 법관·검사의 정직기간 하한은 1개월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3개월로 상향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직유형 간 징계수준의 형평성과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정직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될 경우 장기간 직무수행과 보수지급이 모두 중단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강등에 비해 실질적인 불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 징계종류 간 제재 수준의 균형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징계의 비례성·체계정합성 및 징계대상자의 직업수행에 미치는 불이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정직기간의 하한 및 상한을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정직처분 기간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대폭 연장할 경우 현행 징계양정 체계에서 강등의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징계가 오히려 완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개정안이 정직처분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정직이 가장 낮은 단계의 중징계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미만의 처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특히 비교적 가벼운 중징계 사안에서 징계 양정이 3개월로 획일화되어 구체적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